

目

次

1. 林道施設等真相把握特別委員會活動結果	——	318
2. 書面質問答辯書(林道施設等真相把握特別委員會)	—————	324
3. 建議結果 回信	—————	342
4. 陳情書 處理結果	—————	345
5. 1993年度 地方債借入計劃 同意案	—————	360
6. 1993年度 第2回追加更正豫算案	—————	365

〈 林道施設等 真相把握特別委員會 〉

現 地 確 認 結 果

平 昌 郡 議 會

현 지 확 인 계 획

임도시설및 산림훼손 허가지역의 사후관리 실태와 송어양식장 배출 시설 설치 운영상황을 파악, 관리상의 문제점과 지역주민에 미치는 피해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에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미흡한 부분은 집행부에 촉구하여 주민 편의도모와 민원을 사전방지코자 함.

□ 기본계획

- 기 간 : '93. 9. 1. ~ '93. 9. 2. (2일간)
- 대상사업 : 9건 (임도시설 2, 산림훼손허가 2, 송어양식장 5)
- 확 인 자 : 임도시설등진상파악특별위원회 위원 7인
- 확인반 편성
 - . 총괄 : 위원장 주태원
 - . 반장 : 간 사 이치옥
 - . 반원 : 이상훈위원, 박용태위원, 김낙운위원, 곽문춘위원, 김종영위원
 - . 행정사무보조 : 전문위원 신교선, 의사계장 함경호

□ 세부계획

1. 일일시간 계획

시 간			활 동 사 항	비 고
부 터	까 지	소요시간		
-	09 : 30	-	○ 읍면사무소 도착	
09 : 30	10 : 00	30	○ 휴 식	
10 : 00	12 : 00	120	○ 현지활동	
12 : 00	13 : 00	60	○ 중 식	
13 : 00	17 : 00	240	○ 현지활동	
17 : 00	17 : 30	30	○ 휴 식	
17 : 30	-	-	○ 귀 가	

2. 확인일정및대상사업

구분	확 인 일 정	대 상 사 업 명	비 고
읍면별			
계	'93.9.1 ~ 9.2	9 개 소	
평 창	'93. 9. 1	. 고길승어장	
미 탄	"	. 원복수산, 회동양어장, 청옥수산	
대 화	"	. 대화양어장	
용 평	'93. 9. 2	. 장평 ~ 도사간 임도	
진 부	"	. 하진부 ~ 상월모개간임도 . 승정택지조성지구	
도 압	"	. 국제트랜스개발지구	

3. 현지 활동

- 확인대상사업에 의거 관련실무자 현지안내 및 설명
- 현지관리 실태점검 및 주민여론 청취
-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분석

4. 기타 필요사항

가. 현지활동 자료 준비

- 대상사업장 선정 - 별첨 목록

나. 현지확인 기간중 식사 문제

- 중 식 : 현지식
- 석 식 : 오후 6시 이전 현지출발로 개별 해결

다. 현지활동차량 확보계획

- 읍면도착 — 의원개별
- 현지활동
 - 의회및 의원 소유차량을 최대 활용
 - 승용차 운행이 곤란한 지역에 한해 집행기관 짝차 이용 협조

서류제출대상사업목록

< 임도시설 >

단위 : 천원

시 설 구 간	거 리	총 공 사 비	비 고
계	18km	499,722	
장평 ~ 도사간	10Km	322,422	
하진부 ~ 상월오개간	8km	177,300	

< 산림훼손허가지 >

위 치	건 명	비 고
계	2 개 소	
진부면 송정리	송정택지조성지구	
도암면 횡계리	국제프렌스개발지구	

< 송어양식장 >

송 어 장 명	대 표 자	소 재 지	비 고
계	5 개 소		
고 길 송 어 장	황 용 전	평창읍 고길리	
원 복 수 산	함 준 식	미탄면 창리	
회 동 양 어 장	김 복 한	" 회동리	
청 옥 수 산	차 재 천	" 창리	
대 화 양 어 장	주 준 철	대화면 대화리	

서 면 질 문 답 변 서

- 임도시설등 진상파악 특별위원회 -

서 면 질 문 서

질문의원명	주 태 원 외6인	소 속	평창군의회 임도시설등 진상파악특별위원회
질문대상자	평창군수		
<p>< 질 문 요 지 ></p> <p>1. 진부면 송정리 산242의 1필지 산림훼손 허가지에서 채취된 100,900㎡ 중 '93.5.3 ~ 6.10까지 건설자재용으로 동해시 대신개발로 반출된 15,000㎡ 등에 대하여 ,</p> <p>가. 당초 객토용으로 산림훼손허가된 마사토가 동해시 대신개발의 건설자재용으로 반출된 과정은?</p> <p>나. 객토용인 마사토를 건설자재용으로 반출후 실지사용된 용도와 사용한 과정(절차)은?</p> <p>다. 판내에서 객토용으로 산림훼손허가를 득한 마사토가 타지역의 건설자재용으로 반출된 근거와 소명자료는?</p> <p>라. 현지에 약20,000㎡의 잔토량이 확인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후처리 계획은?</p> <p>마. 훼손지역이 도면상 국도변 가시거리 1,000m이내의 허가 제한지역으로 확인되었는데 이에대한 소견과 사후처리 대책은?</p> <p>2. 판내 송어양식장중 환경오염방지시설 미설치 및 미가동업체와 일부 주민의 여론이 되고 있는 송어양식장에 대해 '94. 1/4분기까지 조업정지등 폐쇄하겠다는 귀청 관계부서장의 '94.9.4 당의회 임도시설등 특위 출석답변에 대하여,</p> <p>가. 조업정지 또는 폐쇄 조치할 수 있는 근거는?</p>			

나. "가"항의 조치에 따른 관계업체의 대처방안과 평창군의 대책은?

다. "가"항의 조치를 이행 하겠다는 평창군의 확인과 관계부서의 조치
미이행시 그에 대한 사후처리는 ?

라. 하류지역인 미탄 소재지 주민의 집단민원에 대한 민원해소 대책은 ?

평 창 군

우 232-800 /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 / 전화 (0374) 32-2011~18 / 전송 (0374) 33-6356

문서번호 기획 13130 - 713

시행일자 1993. 10. 13

발음 평창군의회의장

참조 사무과장

제목 서면질문에대한답변서제출

1. 평의회 제107호('93. 9. 27)의 관련입니다.
2. 위 호에 의거 불임과 같이 제출 합니다.

붙임 : 답변서 1부. 끝.

평 창 군



답 변 서

질 문 의 원		답 변
의원명	주 태 원 의원의 6인	평 창 군 수 (산 립 과 장)
소 속	임도시설등 진상파악 특별위원회	

(질 문 요 지)

1. 진부면 송정리 산 242의 1필지 산림훼손허가에서 채취된 100,900㎡중 '93. 5. 3. - 6. 10일까지 건설자재용으로 동해시 대신개발로 반출된 15,000㎡등에 대하여
 - 가. 당초 객토용으로 산림훼손허가된 마사토가 동해시 대신개발의 자재용으로 반출된 과정은.
 - 나. 객토용인 마사토를 건설자재용으로 반출후 실지 사용된 용도와 사용한 과정 (절차)은.
 - 다. 관내에서 객토용으로 산림훼손허가를 득한 마사토가 타지역의 건설자재용으로 반출된 근거와 소명자료는.
 - 라. 현지에서 약 2,000㎡의 잔토량이 확인되었는데 이에대한 사후처리 계획은.
 - 마. 훼손지역이 도면상 국조변 가시거리 1,000m이내의 허가제한지역으로 확인되었는데 이에 대한 소견과 사후처리 대책은

(답 변 내 용)

" 가 " 항 답변

- . 채취객토중 일부 마사토를 건설자재로 사용코자 채취자 임의로 타지역으로 반출한 것으로서, 반출허가(반출처가 명시된 반출증 발급)제도는 없음.

" 다 " 항 답변

- . 진부면 송정리 산242번지의 1필지의 객토용 토사채취허가 임지에서 허가된 수량내에서채취된용도는 제한을 두지 않음.

" 라 " 항 답변

- . 허가구역 내외 잔토는 전량 훼손지복구에 사용토록 지도하였음.

답 변 서

“ 마 ” 항 답변

- . 토사채취지역이 도면상에 국도변에서 1,000m이내이나, 허가 당시 도로변과 채취신청지 사이에 훼손되지않은 산림원형이 개재되어 차폐된 상태로서 허가제한지역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택지조성에 따라 가시구역으로 노출되었으므로 본건 제한사항에 해당되지 않음.

답 변 서

질 문 의 원		답 변	
의원명	주 태 원의원의외 6인	평 창	군 수
소 속	임도시설등 진상파악 특별위원회	(건 설 과 장)	

< 질 문 요 지 >

- . 1번 나항 객토용인 마사토를 건설자재용으로 반출후 실지 사용된 용도와 사용한 과정(절차)은?

< 답 변 내 용 >

- . 동해시에 반출사실이 있어 건설 58175-796('93. 6. 15)호로 동해시에 객토 사업용 토사채취허가를 받아 객토사용후 잔량을 건설자재로 반출하였다는 내용을 통보하였으며, 사용된 용도는 파악할 수 없음.
- 또한 건설용자재로 사용시 사용용도에 따라 품질기준(최대입경, 입도, 내구성, 마모성등)을 사전 조사하여 적합할 경우 사용가능하므로 사업발주자와 건설업자가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함.

첨부 : 통보된 공문 사본 1부. 끝.

평 창 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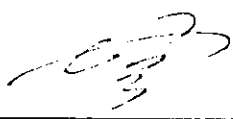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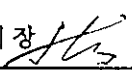
232-800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 / 전화 (32-2011~18) / 전송

문서번호 건설 58175 - 226

시행일자 1993. 6.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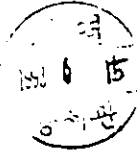
발음 동해시장

참조 건설(도시)과장

취급		군수
보존	년	
부군수		
과장	김경	
기안	지동	지역계획계장  협조

제목 객토사업용 토사채취허가에 따른 통보

우리군의 진부면 하진부리 김 일 계가 객토사업용 토사채취허가를 받아 객토사용 후 잔량을 건설용 자재로 동해시에 반출한 사실이 있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답 변 서

질 문 의 원		답 변	
의원명	주 태 원 의원외 6인	명 장 군 수	
소 속	임도시설등 진상파악 특별위원회	(축 산 과 장)	

< 질 문 요 지 >

2. 관내 송어양식장중 환경오염 방지시설 미설치 및 미가동 업체와 일부 주민의 여론이 되고 있는 송어 양식장에 대해 '94. 1/4분기 까지 조업정지등 폐쇄 하겠다는 귀정 관계 부서장의 '94. 9. 4 당의회 임도시설등 특위 출석 답변에 대하여.

가. 조업정지 또는 폐쇄 조치할 수 있는 근거는 ?

< 답 변 내 용 >

사육지 면적 1,000㎡ 이상 규제대상 양식장의 경우

◦ 조업정지근거

· 수질환경 보전법 제17조 제1항 (조업정지 명령등)

· 수질환경 보전법 제25조 <행정처분의 기준 및 동법 시행규칙 제66조 (행정처분의 기준)

◦ 폐쇄조치 근거

· 수질환경 보전법 제20조 (허가의 취소등)

※ 별첨 관련 법규내용 참조

사육지 면적 1,000㎡ 미만의 소규모 양식장의 경우 수질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규정된 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나 조업정지 또는 폐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 별첨 관련법규 발췌내용 참조

답 변 서

질 문 의 원		답 변	
의원명	주 태 원 의원외 6인	명	장 군 수
소 속	임도시설등 진상파악 특별위원회	(축 산 과 장)	

< 질 문 요 지 >

나. "가"항의 조치에 따른 관계업체의 대처방안과 평창군의 대책은 ?

< 답 변 내 용 >

□ 양식업체 대책

- 양식업소의 영세성 및 송어가격 하락으로 자금경영상 어려운 실정이나 오염 방지시설 미설치 업체에서는 '93년 12월말 까지 정화시설을 설치 하겠다는 확약이 있으며

□ 평창군의 대책

-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하여 미설치 업체에 대하여는 '93년 12월말까지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토록 노력하겠으며 미이행시는 어업신고기간 만료후 연장시 우수인용 허가 제한등 행정조치를 취하겠으며
- 현재 양식업계의 불황으로 대부분의 업체가 극심한 경영난에 처해 양식장 자체적으로 수질오염 방지시설 설치가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 '93. 9. 28일자로 오염 방지시설 설치자금 1억7천만원(보조 5천, 융자 1억2천)을 농어촌 발전기금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수산정에 요청 하였습니다.

답 변 서

질 문 의 원		답 변	
의원명	주 태 원 의원외 6인	명	장 군 수
소 속	임도시설등 진상파악 특별위원회	(축 산 과 장)	

< 질 문 요 지 >

다. "가"항의 조치를 이행하겠다는 평창군의 확인과 관계부서의 조치미이행시 그에 대한 사후관리는 ?

< 답 변 내 용 >

□ 양식장 관리에 대한 현행 법적 제한사항

- 수질환경 보전법 제10조, 제11조, 등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하면 사육 수면적 1,000㎡이상의 양식장은 배출시설 및 오염방지 시설을 위한 정화 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
- 하천법에 의하면 양식업자가 양식장 운영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우수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바 이경우 행정기관 에서는 하천의 오염으로 인한 공해, 기타 공중위생상 위해를 방지함에 필요한 부관을 붙일수있고 하천 사용 업자와의 이해관계 조절을 위하여 기득하천 사용자의 동의를 요구 할 수 있고 법 제29조에 의거 수량 보족의 경우 우수점용을 조정 또는 제한할 수 있으며

□ 규제미만 송어장으로 부실 양어장에 대하여는 신고기간 연장불허 또는 자진 폐쇄를 적극 유도함은 물론 정화시설 미설치로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양어장에 대하여는 하천법 제25조 제1항의 우수인용 허가기간 만료시 관계 부서와 협의 신중한 검토와 함께 연장허가를 불허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추진하겠습니다.

답 변 서

질 문 의 원		답 변	
의원명	주 태 원 의원외 6인	평 장 군 수	
소 속	임도시설등 진상파악 특별위원회	(축 산 과 장)	

< 질 문 요 지 >

라. 하류지역인 미탄 소재지 주민의 집단민원에 대한 민원해소 대책은 ?

< 답 변 내 용 >

주민여론

- 미탄면 회동리에 소재한 회동양어장(경영자 김복한)에서 배출되는 양어 용수가 회동리 계곡전으로 유입되므로 하류지역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 함으로 양어장 운영을 중단하여야 한다는 여론대두

민원해소 대책

- 개별 법령상 인허가 절차상 하자가 없을경우 직권 폐쇄는 실정법상 어려운 실정이나 지역주민의 여론 및 요망사항등을 충분히 검토 군자체에서 적절한 대책강구
- 승어 양식장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 및 유수사용량 제한 및 슬러지 청소시 관계 공무원 입회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
- 정화시설 설치운영 상태를 분기별로 점검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현지도 강화
- 수질오염 방지시설 확대에 따른 설치자금을 정부차원에서 농어촌 발전 기금으로 보조 및 저리 융자로 지원될 수 있도록 축산 57728 - 867('93. 9. 28) 1억7천만원을 지원 요청 하였으며 확정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노력 하겠습니다.

관 련 법 규 내 용

□ 수질환경보전법 제17조 (조업정지명령등)

① 환경처장관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내의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결과가 제8조 또는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 기준을 계속 초과할 때에는 당해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업정지명령을 할 수 있다.

□ 수질환경보전법 제52조 (행정처분의 기준)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66조 (행정처분 기준)

①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별표 20) 배출시설및 방지시설등과 관련된 행정처분 기준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 정 처 분 기 준			
		1 차	2 차	3 차	4 차
(13)법 제10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배출시설의 경우 (가)신고대상시설로 신고 지 아니한 경우	법 제16조 법 제17조 법 제20조	경 고	사용금지	폐쇄명령	
(나)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경 고	경 고	사용금지	폐쇄명령
(다)오염물질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 또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개선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조업정지

□ 수질환경보전법 제 20조 (허가의 취소등)

② 환경처장관은 제10조 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가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 할 때에는 당해배출시설의 조업을 정지 시키거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관련 법조문 발취 내용

법 조 항	내 용
수질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6의 "터"항	터, 기타시설(일반시설) 특정유해물질 및 중금속이 포함되지 아니한 폐수를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1㎍/H 이상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시설, 다만 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보호구역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환경처장관이 고시한 지역에서는 폐수 배출량 2㎍/D 이상
수질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별 첨)
하천법 제29조	(수리권 조정) 유수점용에 있어 수량이 부족하거나 그이용이 상호 침해가 될 때에는 수리권의 행사에 관하여 당사자의 신청 또는 그의 직권 에 의하여 이를 조정 또는 제한할 수 있다.

[별표 5]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제8조 관련)

1.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화학적산소요구량·부유물질량

가. 199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기준

지역구분	대상규모	1일폐수배출량 3,000m ³			1일폐수배출량 3,000m ³ 미만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mg/l)	화학적 산소요구량 (mg/l)	부유 물질량 (mg/l)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mg/l)	화학적 산소요구량 (mg/l)	부유 물질량 (mg/l)
상지	환경기준(수질) I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50이하	50이하	50이하	50이하	50이하	50이하
		80이하	80이하	80이하	100이하	100이하	100이하
나지역	환경기준(수질) III, IV, V 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100이하	100이하	100이하	150이하	150이하	150이하

환경처장관이 공단 폐수종말처리구역으로 지정하는 지역 및 시장·군수가 산업지입지및개발제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농공단지	30이하	50이하	70이하	30이하	50이하	70이하
---	------	------	------	------	------	------

비고 : 1.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받는 일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종말처리장폐수처리안에 위치한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동 처리장설치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의하여 폐수 또는 하수종말처리장설계기준농도이내에서 환경처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만, 하수종말처리장의 폐수구역안에 위치한 폐수배출시설에 대하여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능력이 폐수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전량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진 경우에 한한다.

(개정 92. 8. 8)

2. 폐수배출량의 산정은 시설�용량을 기준으로 하되, 회석수의 사용에 경우에는 회석수량, 폐수제이용의 경우에는 제이용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답 변 서

질 문 의 원		답 변
의 원 명	주 태 원 의 원 외 6인	평 창 군 수
소 속		(환 경 보 호 과 장)

(질 문 요 지)

2. 관내송어양식장중 환경오염방지시설 미설치 및 미가동업체와 일부주민의 여론이 되고 있는 송어양식장에 대해 '94. 1/4분기까지 조업정지등 폐쇄하겠다는 귀청 관계부서장의 '93. 9. 4 당의회 입도시설등 특위 출석답변에 대하여,

가. 조업정지 또는 폐쇄 조치할 수 있는 근거는 ?

(답 변 내 용)

(조업정지 근거)

- 수질환경보전법 제17조 제1항 (조업정지 명령등)
- 수질환경보전법 제52조 (행정처분의 기준) 및 동법시행규칙 제66조 (행정처분의 기준)

(폐쇄조치 근거)

- 수질환경보전법 제20조 (허가의 취소등)

※ 내용 별첨 참조

답 변 서

질 문 의 원		답 변
의 원 명	주 태 원 의 원 외 6인	평 창 군 수
소 속		(환 경 보 호 과 장)

(질 문 요 지)

2. 관내송어양식장중 환경오염방지시설 미설치 및 미가동업체와 일부주민의 여론이 되고 있는 송어양식장에 대해 '94. 1/4분기까지 조업정지등 폐쇄하겠다는 귀청 관계부서장의 '93. 9. 4 당의회 임도시설등 특위 출석답변에 대하여,

나. "가"항의 조치에 따른 관계업체의 대처방안과 평창군의 대책은 ?

(답 변 내 용)

(양식업체 대책)

- 양식업체의 대책은 본군에서 최근 양식업체와의 행정지도시 확인한바로는 자금사정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많으나 '93년 12월까지는 반드시 방지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확약한바 있습니다.

(평창군의 대책)

-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하여 반드시 '93년 12월말까지는 방지시설을 설치완료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불이행시 '94. 1/4분기내 강력한 행정조치(조업정지등)를 취하겠습니다.

관 련 법 규 내 용

□ 수질환경보전법 제17조 (조업정지명령등)

① 환경처장관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내의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결과가 제8조 또는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 기준을 계속 초과할 때에는 당해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업정지를 명할수 있다.

□ 수질환경보전법 제52조 (행정처분의 기준)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66조 (행정처분 기준)

①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별표 20) 배출시설및 방지시설등과 관련된 행정처분 기준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 정 처 분 기 준			
		1 차	2 차	3 차	4 차
(13)법 제10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배출시설의 경우	법 제16조				
(가)신고대상시설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7조				
(나)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0조	경 고	사용금지	폐쇄명령	
(다)오염물질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 또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경 고	경 고	사용금지	폐쇄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조업정지

□ 수질환경보전법 제 20조 (허가의 취소등)

② 환경처장관은 제10조 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가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 할 때에는 당해배출시설의 조업을 정지 시키거나 폐쇄를 명할수 있다.

건의 결과 회신

- 특별소비세를 목적세로 전환하려는 정부방침 철회촉구
- 도세징수 교부율 조정에 관한 건의

국 회 사 무 처

우 150-70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전화(02) 788-2154

문서번호 의안제 36·1 호

시행일자 1993. 9. / .

수신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
평창군의회 의장

제목 건의서 송부통지

1993. 9. 1. 귀 의회에서 제출한 "유류분특소세의목적세전환반대에관한건의서"는 재무위원회에 송부하여 업무에 참고토록 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끝.

국 회 사 무 처 총



"정직 · 성실하게 봉사한다."

내

무

부

우 110-760 / 종로구 세종로 77 종합청사 1407호 / 전화 731-2510 (행)2510 / 전송 731-2836

문서번호 세 제 13400
 시행일자 1993. 8. 10
 No. 00295
 사유
 수신 평창군의회 의장
 참조

선			지	
결			시	
접	일자		결	
	시간			
수	번호		재	
			공	
처	리	과	람	
담	당	자		

제목 도세징수교부율 조정 건의에 대한 회신

1. 평의회 제 88호('93. 8. 10)와 관련입니다.

2. 도세징수교부율 조정에 관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도와 시군간의 자원조정에 관한 문제이므로 귀 의회에서 건의한 사항은 지방세법 개정시 검토할 계획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끝.

내

무

부

장

세 제 파 장 전 결



진정서 처리결과 회신

- 임도개설로인한 산사태 피해 보상요구
- 진부시가지 우회도로 개설 요구
- 임하교 조기건설 요구

진 정 서

접 수 일	1993 년 8 월 12일	진 정 번 호	4
주 소	평창군 진부면 상월오개2리 2반		
성 명	최 상 철		
소 관 위 원 회			
건 명	임도개설로 인한 산사태 피해보상 요구		

진 정 요 지 (1. 이유및 경과 2. 요구사항)

- 금년 7월 13일 뒷산에 임도를 막는 바람에 산사태가 나서 농사가 전부 망가졌음.
- 소유농지 680평, 임대농지 2,550평 합계 3,230평이 매몰 되었음.
- 루자비 5,705천원의 보상을 요구

평 창 군

우 232-800 /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 / 전화 (0374) 32-2011~18 / 전송 (0374) 33-6356

문서번호 기획 13131 - 019

시행일자 1993. 8. 26

발음 평창군의회외장

참조 사무과장

제목 농작물피해보상요구에대한진정처리및의견통보

1. 평의회 제89호('93. 8. 17)의 관련입니다.
2. 위 호에 의거 불임과 같이 통보 합니다.

불임 : 농작물 피해보상 진정에 따른 처리 및 의견 1부. 끝.

평 창 군



임도개설로 인한 산사태 발생에 따른 농작물 피해보상요구 진정 처리 및 의견

□ 진 정 인

- 주 소 : 진부면 상월오개2리 2반
- 성 명 : 최 상 철

□ 처 리 결 과

- 산림과 소관

· 재해대책법에 의한 피해보상

농 가 명	피해면적(농작물)	피 해 액	피해보상액(농약대)	비 고
최 상 철	4,920 평	5,530천원	48 천원	농약대 ha당29,500원

- 산림과 소관("별첨" '93. 8. 7 진정인에게 통지)

- '93. 7. 13 폭우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를 입게된데 대하여 위로에 뜻을 전하고 조속히 해결하여 드리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함.
- '91년도에 신설한 평창군 민유 임도가 유실되면서 농작물에 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실은 부인하지 않으나 임도유실 원인이 국부적인 폭우로 인하여 발생되기는 하였으나 천재지변이 아니라고 할수없는 실정임
-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농가에 대한 생계지원은 양쪽일부(10가마 내외) 를 지원하는 외에 농경지복구비, 종자대, 비료대를 지원하는 외에는 보상규정이 없는 관계로 농작물에 대한 피해보상은 어려운 실정임.

□ 처 리 의 건

- 농어업 재해대책법에 의한 정부보상(48,000원)과, 본인이 원할경우 군 자체적으로 처리 농사자금을 앞선 '94영농을 지원코자함(연리5%, 4,000천원한도내)

□ 건 의 (강원도)

○ 문 제 점

· 시설비 책정 불합리('93년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소관부서	'93사업량	공 사 비	Km당 단가	비 고
농어촌소 득원도로	건설과	2 Km	530,000	265,000	· '92평창군 Km당 사업비(단비) - 면도: 288백만원 - 리도: 200 " - 농토: 100 "
오지종합 개발도로	"	8 Km	815,714	100,000	
임 도	산림과	6 Km	203,752	40,498	

○ 대 책 (건의)

- 재해보상 기준을 떠나 하자보상 차원에서 보상될수있는 근거 마련 요망
- 기 시설된 임도에 대하여 재해방재 소요예산 확보(책정)등 보완대책 마련 요망

진 정 요 지 서

접 수 일	1993 년 9 월 10일	진 정 번 호	5
주 소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성 명	평창군 진부면 번영회장 홍형옥외 1015명		
소 관 위 원 회			
건 명	진부 우회도로 개설 요구		

진 정 요 지 (1. 이유및 경과 2. 요구사항)

- 6번 국도상에 위치한 진부면은 서울-강릉간 영동고속도로와 연계되어 일일 정기 노선버스 300여대와 관광차량등 대부분의 차량이 진부 시가지를 운행하고 있음.
- 주문진, 소금강, 정선, 홍천 내면등의 교통량 증가로 시가지 통행 차량이 1일1만여 대로 증가 관광성수기인 주말과 연휴에는 교통 체증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송정택지 3만명이 조성되므로 진부시가지 균형발전을 위해 우회도로 개설이 절실
- 시가지 도로 주변 불법주정차로 막대한 지장이 있을뿐 아니라 주차공간이 없어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우회도로 개설이 선행되어야 겠음.

건의서

민족의 번영과 신한국 건설을 위하여 애쓰시는 평창군 의회 의장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14,000 면민은 지금까지 모든 국가시책을
하나의 소명의식으로 받아 들이고 나름대로 국민의 도리를 다하면서 순박
하게 살아 왔습니다.

이제 문민 시대를 맞이하여 새롭게 도약하는 시점에서 또 다른 각오로
솔선참여 할것을 다짐하면서 오랫동안 면민의 숙원사업으로 추진하여 왔던
『 진부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사업 』 시행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① 6번 국도상에 위치한 진부면은 서울 ⇄ 강릉 간 영동 고속도로에 연계되어
있으나 일일 정기 노선버스가 300여대 운행하고 있으며 오대산 국립공원
등 관광지가 인접하여 있어 관광차량 등 대부분의 차량이 진부 시가지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② 주문진, 소금강 등으로 통하는 6번도로와 정선·홍천 내면등의 교통량이
증가 되면서 시가지 통행량이 1일 1만여대로 늘어났고 관광 성수기인
주말, 연휴시에는 체증현상 까지 발생하고 있으며

③ 시가지를 흐르는 오대천을 중심으로 송정택지 3만평이 조성 되므로서 진부
시가지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우회도로는 더 한층 절실하여 졌습니다

- ④ 나날이 증가하는 차량들로 현재 시가지 도로 주변에는 불법주정차로 통행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차공간이 없어 행정기관의 단속도 한계에 이르고 있어 우회도로와 연계하여 하천 고수부지를 조성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나 이 또한 우회도로가 선행 되어야 하며
- ⑤ 해마다 증가하는 교통사고는 금년도 7 월말 현재 37 건이 발생하여 사망 5 명, 부상 25 명으로 위와 같은 도로 여건으로는 인명 피해를 줄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진부면민의 절박하고 안타까운 심정을 건의하오니
해아려 주시고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이 되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3 년 9 월 일

진부면 번영회 및 면민 일동

평 창 군

우 232-800 /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 / 전화 (0374) 32-2011~18 / 전송 (0374) 33-6356

문서번호 기획 13130 - 211

시행일자 1993. 10. 13

받음 평창군의회외장

참조 사 무 과 장

제목 진부면시가지우회도로개설요구에따른건의사항처리결과통보

1. 평의회 제101호('93. 9. 16) 의 관련입니다.
2. 위 호에 의거 불임과 같이 통보 합니다.

붙임 : 처리결과(항후계획) 1부. 끝.

평 창 군



처리결과(향후계획)통보

- 건의내용 : 진부시가지 우회도로 개설 건의
- 건 의 자 : 진부면 번영회장 홍 형 옥의 주민 1,015명

-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

진부면 번영회장 홍 형 옥의 주민 1,015명 으로부터 진부면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을 요구하는 건의는 우리군에서 진부면민의 숙원사업으로 파악하여 관리 하여 오면서

- '93. 7. 21 군수와 건설과장이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하여 「진부시가지 진입차량 적체현상 해소 및 주민교통편의 제고와 사고위험 감소」를 위하여 1,500m의 우회도로를 '94년 사업으로 추진하여 준것을 건의 하였 으며
- '93. 9. 3 민주자유당 영월, 평창지구 심 명 보 국회의원과 면담시에도 본 내용을 건의한바 있습니다.
- 앞으로도 계속 도로관리청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본 건의 사항이 반영될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통보 합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우 220-100 강원 원주 단계 783 /전화 (0371) 42-6162-4 / 전승 42-6162(305)

문서번호 도계 58707-20/0

시행일자 1993. 9. 20.

발령 평창군 의회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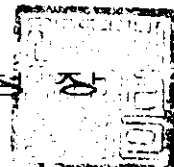
제목 민원사안처리 협조의회 회시

1. 평의회 제101호 ('93.9.16)의 관련입니다.

2. 귀의회에서 찬부시가자 우회도로 개설건의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본사업이 시행될수 있도록 불임과 같이 건설부에 건의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그리하시기 바랍니다.

불임 : 건설부장관앞 공문사본 1부. 끝.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원 주 지 방 국 토 관 리 청

우 220-100 강원 원주 단계 783 /전화 (0371) 42-6162-4 / 전송 42-6162(305)

문서번호 도계 58711-1460

시행일자 1993. 9. 15.

발음 건설부장관

참조 도로국장

선			지	
결			시	
점	일자	:	결	
	시간	:	재	
수	번호		·	
			공	
처	리	과	람	
담	당	자		

제목 진부우회도로 개설건의

1. 도계 58711-1468 ('93.7.24)의 관련입니다.

2. 위호 관련으로 건의한바 있는 국도6호선중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 - 상진부구간 (L=3.7KM) 진부우회도로 개설에 대하여, 진부면 번영회장등 지역주민 1015명으로부터 우회 도로개설 건의가 있어 검토한바 본구간은 국도가 진부면 시가지 중심부를 관통하고 있어 시가지의 신호대기등으로 정체현상이 심각하고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실정이오니 지역주민의 숙원 사업인점을 감안하시어 본사업이 조속 시행될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진부면 번영회 (1015명)건의서 사본 1부. 끝.

진 정 요 지 서

접 수 일	1993년 10월 6일	진 정 번 호	6
주 소	평창군 평창읍 임하리		
성 명	임하리 이장 홍성갑외 주민일동		
소 관 위 원 회			
건 명	임하교 조기 건설요구		

진 정 요 지 (1. 이유및 경과 2. 요구사항)

- 임하리와 계장리간 연장 135m 폭 5m의 교량을 총건설비 6억여원으로 가설코자 92년 2억원, 93년 1억원을 투자 교각이 완료된 상태이나 상판 건설비 약4억원이 부족하여 중단된 상태 임으로 '94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임하교량이 조기 완공 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 교량가설 장소 결정과정에서 웃동네와 아랫동네가 의견을 달리하여 현재에는 마을 중심을 경계로 분열되어 있어 조속한 시일내 교량완공으로 주민화합 차원에서 94년에 임하교량이 완공되길 기원,
- 1일60여명이 도선을 사용하고 있으나 도선이 낡고 (1985년 제작) 60세 이상되는 분들이 운행하고 있어 인명피해가 우려되며 순번 도선 운행으로 농촌의 부족한 인력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임.

평 창 군

우 232-800 /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 / 전화 (0374) 32-2011~18 / 전송 (0374) 33-6356

문서번호 기획 13130 - 212

시행일자 1993. 10. 13

받음 평창군의회회장

참조 사무과장

제목 임하교조기완공요구에따른건의사항처리결과통보

1. 평의회 제109호('93. 10. 8)의 관련입니다
2. 위 호에 의거 불임과 같이 통보 합니다.

붙임 : 처리결과(항후계획) 1부. 끝.

평 창 군



처리결과(향후계획)통보

- 건의내용 : 임하교 가설 조기 마무리
- 건 의 자 : 임하리장 홍 성 갑외 주민일동
-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

임하교량은 총 연장 135m 폭 6.6m로 '92년부터 올해까지 304백만원('91년 204백만원, '92년 100백만원)을 투자하여 교대 2기와 교각 8기는 완료 하였으나 나머지 상판 9경간 및 진입도로 건설은 예산을 확보치 못하여 시공치 못하고 있으나

'94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추진할 계획임을 통보 합니다.

'93 지방채차입계획의결요구(안)

의안 번호	134
----------	-----

제안년월일 : 1993. 10.

제안자 : 평창



김종돈

1. 제안사유

'93년8월 태풍 "로빈" 으로인한 피해를 조기에 복구하여 인명 및 재산의 손실을 예방함은 물론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항구복구에 소요될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기위해 국고보조금중 증액분에대한 지방채차입을 의결 요구함.

2. 주요골자

■ 지방채차입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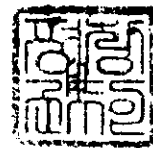
< 일반회계 >

- 사업명 : '93.8월 태풍 "로빈" 피해복구사업
- 기재규모 : 일십삼억원 (₩1,300,000,000)
- 기재선 : 농협자금
- 기재종류 : 증서차입
- 발행시기 : '93.10.
- 이율 : ^{년 8.5%} ~~년 8.5%~~
- 상환기간 : '94년일시상환
- 상환재원 : 국비

地方債發行承認申請書(證書借入債)

1. 事業名 : 第7號颱風"로빈"에 따른 水害復舊事業
2. 承認申請額 : 일십삼억원 (₩1,300,000,000)
3. 借入先 : 農協
4. 資金種類 : 一般資金 일십삼억원 (₩1,300,000,000)
5. 利率 : 年 8,5 %
6. 發行期間 : 1993年 11月
7. 償還方法 : '94年度 一時償還
8. 償還財源 : 國費
9. 會計名 : 一般會計
10. 事業計劃書 : 別添
11. 地方債償還計劃 : "
12. 債務現況 : "
13. 可用財源現況 : "
14. 誓約書 : "

平 昌 郡 守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 115조

제 115조 (지방채무및채권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복구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내무부장관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93년 평창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안	
번호	129

제안년월일 : 1993. 10.

제안자 : 평창군



1. 제안 사유

'93 8월 태풍 "로빈" 피해복구및 군정시책의 효율적인 수행과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 요구합니다.

2. 제안 주요내용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의결요구액은 총 4,742백만원으로 일반회계 4,546백만원과 특별회계 196백만원이며

(세입)

일반회계는 보조금 2,446백만원, 특별교부세 800백만원, 지방채1,300백만원으로 되어있고

특별회계는사업외수입 25백만원, 보조금 171백만원입니다.

(세출)

일반회계의 편성은 인건비 48백만원, 관서운영비 18백만원, 기본경상비308백만원, 경상사업비 < 97 백만원, 주요사업비4,503 백만원, 기타 > 234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경상사업비 171 백만원, 주요사업비 <15백만원기타경비40백만원 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 관계 법령

1) 지방재정법 제 36 조

지방자치단체는 이미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가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 할 수 있다.

다만, 국가나 도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우에는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전에 이를 사용 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년도내에 차기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 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법 제 121 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에 변경을 가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첨부: '93년도 제 2 회 추가경정예산안 1부. 끝.

1993년도 (2회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안)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평 창 군

외 산 총 죄

1983 년도 [2회추경]

• 제1조 : 198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입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회 계 별	세입세출 예산총액	입시차입 한도액
총 계	59,344,389	1,780,331
일반회계	48,243,652	1,447,309
특별회계	11,100,717	333,021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064,285	91,928
주택사업특별회계	840,029	25,200
취토보호기금특별회계	540,673	16,220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	10,175	305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47,400	4,422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	107,443	3,223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483,009	14,490
공유임야관리사업특별회계	75,550	2,266
지방상여금관리사업특별회계	5,832,153	174,964

• 제2조 :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 제3조 : 1983년도 재무부담행위는 별첨 '재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 제4조 : 1983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500 백만원으로 한다.

• 제5조 : 1983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 조서와 같다.

• 제6조 : 1983년도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조서'와 같다.

• 제7조 : 일반회계 예비비는 162,976천원으로 한다.

예 산 총 규 모

(단위 : 천원)

구 분 회 계 별	예 산 액	전 년 도 (기 경) 예 산 액	증 ▲ 감
계	59,344,369	54,601,771	4,742,598
인 반 회 계	48,243,652	43,697,304	4,546,348
특 별 회 계	11,100,717	10,904,467	196,250
상 수 도 사 업	3,064,285	3,064,285	0
주 택 사 업	840,029	839,349	680
의 료 보 호 기 금	540,673	369,973	170,700
새 마 을 소 득 금 고	10,175	10,175	0
영 세 민 생 활 안 경 기 금	147,400	147,400	0
새 마 을 소 득 특 별 지 원 사 업	107,443	107,443	0
농 공 지 구 조 성 및 관 리 사 업	483,009	458,139	24,870
공 유 임 야 관 리 사 업	75,550	75,550	0
지 방 양 여 금 사 업	5,832,153	5,832,153	0

11 1.세입세출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분	합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액	구성비율(%)	전년도(기경) 예산액	구성비율(%)	증△감	예산액	구성비율(%)	전년도(기경) 예산액	구성비율(%)	증△감	예산액	구성비율(%)	전년도(기경) 예산액	구성비율(%)	증△감
계	59,344,369	100%	54,601,771	100%	4,742,598	48,243,652	100%	43,697,304	100%	4,546,348	11,100,717	100%	10,904,467	100%	196,250
지방세	4,886,432	8%	4,886,432	9%	0	4,886,000	10%	4,886,000	11%	0	432	0%	432	0%	0
세외수입	18,306,797	31%	18,281,247	33%	25,550	12,284,693	25%	12,284,693	28%	0	6,022,104	54%	5,996,554	55%	25,550
경상경제외수입	3,915,784	7%	3,911,697	7%	4,087	2,866,321	6%	2,866,321	7%	0	1,049,463	9%	1,045,376	10%	4,087
임시경제외수입	14,391,013	24%	14,369,550	26%	21,463	9,418,372	20%	-9,418,372	22%	0	4,972,641	45%	4,951,178	45%	21,463
지방교부세	18,361,000	31%	17,561,000	32%	800,000	18,361,000	38%	17,561,000	40%	800,000	0	0%	0	0%	0
지방양여금	3,944,186	7%	3,944,186	7%	0	0	0%	0	0%	0	3,944,186	36%	3,944,186	36%	0
보조금	12,545,954	21%	9,928,906	18%	2,617,048	11,411,959	24%	8,965,611	21%	2,446,348	1,133,995	10%	963,295	9%	170,700
국고보조금	5,597,019	9%	4,081,650	7%	1,515,369	5,056,764	10%	3,712,095	8%	1,344,669	-540,255	5%	369,555	3%	170,700
도비보조금	6,948,935	12%	5,847,256	11%	1,101,679	6,355,195	13%	5,253,516	12%	1,101,679	593,740	5%	593,740	5%	0
지방채	1,300,000	2%	0	0%	1,300,000	1,300,000	3%	0	0%	1,300,000	0	0%	0	0%	0
계	59,344,369	100%	54,601,771	100%	4,742,598	48,243,652	100%	43,697,304	100%	4,546,348	11,100,717	100%	10,904,467	100%	196,250
기본적경비	15,630,129	26%	15,255,117	28%	375,012	15,441,851	32%	15,067,519	34%	374,332	188,278	2%	187,598	2%	680
연건비	8,437,429	14%	8,388,908	15%	48,521	8,431,709	17%	8,383,868	19%	47,841	5,720	0%	5,040	0%	680
관서운영비	3,342,787	6%	3,324,590	6%	18,197	3,235,100	7%	3,216,903	7%	18,197	107,687	1%	107,687	1%	0
기본경상비	3,849,913	6%	3,541,619	6%	308,294	3,775,042	8%	3,466,748	8%	308,294	74,871	1%	74,871	1%	0
사업비	39,057,727	66%	34,496,078	63%	4,561,649	29,576,679	61%	25,170,330	58%	4,406,349	9,481,048	85%	9,325,748	86%	155,300
경상사업비	2,885,716	5%	2,812,286	5%	73,420	2,349,164	5%	2,446,444	6%	-97,280	536,552	5%	365,852	3%	170,700
주요사업비	36,172,011	61%	31,683,782	58%	4,488,229	27,227,515	56%	22,723,886	52%	4,503,629	8,944,496	81%	8,959,896	82%	-15,400
기타경비	4,656,513	8%	4,850,576	9%	-194,063	3,225,122	7%	3,459,455	8%	-234,333	1,431,391	13%	1,391,121	13%	40,270

'93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제안설명

□ 제2회추경 세입세출 총괄

[일반회계]

○ 세 입 _____ 4,546백만원

- . 지방교부세 _____ 800백만원
- . 보조금 _____ 2,446백만원
 - ┌ 국고보조 _____ 1,344백만원
 - └ 도비보조 _____ 1,102백만원
- . 지방채 _____ 1,300백만원

○ 세 출 _____ 4,546백만원

- . 기본적경비 _____ 374백만원
 - ┌ 인건비 _____ 48백만원
 - ├ 관서운영비 _____ 18백만원
 - └ 기본경상비 _____ 308백만원
- . 사업비 _____ 4,406백만원
 - ┌ 경상사업비 _____ ▲ 97백만원
 - └ 주요사업비 _____ 4,503백만원
(수해복구 4,030, 기타 473)
- . 기타경비 _____ ▲ 234백만원

※ '94 채무부담액 _____ 335백만원

□ 제2회추가경정 예산편성 사유

[세입면]

- '93 태풍 "로빈" 피해복구에 따른 국도비 보조 및 특별교부세 내시
- 기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	지방교부세	_____	800백만원
	보조금	_____	2,446 "
	지방채	_____	1,300 "
	계	_____	4,546 "

[세출면]

- '93 태풍 "로빈" 피해복구사업 _____ 4,030백만원
-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에 의한 사업비 조정 _____ 516백만원

□ 예산규모

(단위:백만원)

회계별	예산액	당초	1회	2회	비고
계	59,343	51,742	2,859	4,742	
일반회계	48,243	40,917	2,780	4,546	
특별회계	11,100	10,825	79	196	

[특별회계]

(단위:백만원)

회 계 별	예 산 액	당 초	1 회	2 회
계	4,927	4,538	193	196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064	3,096	▲ 32	0
주택사업특별회계	840	839	0	1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540	446	▲ 76	170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 특별회계	483	157	301	25

'93제2회추경예산주요사업내역(수해복구)

(단위:천원)

사업명	사업량	요구액	비고
계		4,078,182	
○ 간이급수시설	3개소	22,437	
○ 농작물	64ha	6,813	
○ 농경지	52개소 26.55ha	390,222	
○ 수리시설	10개소, 270m	239,466	
○ 축산	축사1동	3,720	
○ 비닐하우스	1동	928	
○ 주택기반	침수주택이주 40동	260,000	
○ 도로	15개소	427,110	
○ 하천	25개소	242,398	
○ 소규모	83개소	2,205,406	
○ 관공서시설	2건	160,870	
○ 사방기타	2건	118,812	

주요국도비보조사업내역

사 업 명	계	국 비	도 비	군 비	비 고
계	533, 708	167, 400	270, 785	95, 523	
• 건강한국토가꾸기 1단계사업	50, 000	25, 000		25, 000	
• 농어민자녀학자금	▲ 57, 877	▲ 13, 752	▲ 22, 062	▲ 22, 063	
• 수간주사	▲ 36, 392	▲ 16, 744	▲ 5, 666	▲ 13, 982	
• 피해목벌채	30, 008	14, 927	3, 513	11, 568	
• 국유화대상재산권리 보전공고료	157, 969	157, 969			
• 재해대책사업비	50, 000		50, 000		
• 대화시가지도로정비	100, 000		100, 000		
• 횡계교탕가설공사	150, 000		100, 000	50, 000	
• 과제류비가림제배	90, 000		45, 000	45, 000	